

발명의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김 시 호 교수

메일: jurist4024@gmail.com



》 동아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사업단

Con tents

- 특허 발명의 정의
- 투허 등록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3 실용신안 제도
- 4 지시재산 능력시험 소개
- 5 특허검색 기출문제

진보성

진보성이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외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사상에 대 해서 특허권을 부여한다면,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창작 수준이 낮은 발명을 배제하고, 자연적인 진보 이상의 발명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미국사례: 거의 동일한 자전거 후출원의 등록 사례

결합발명의 경우 선행문헌에 정확히 기재되지 않을 경우 쉽게 특허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진보성 판단으로 인하여 선행문헌에 조금 언급된 내용도 후출원 특허등록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등록 요건_(진보성)

진보성이 있는지 기준은?

① 주체적 기준

심사관이 당해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② 객체적 기준

특허출원 전 국내외 공지기술과 특허 출원된 발명의 청구범위의 청구항을 비교한다.

③ 시기적 기준

특허출원 전에 공지기술이 있어야 한다 특허출원 전이란 특허 출원시를 기준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④ 지역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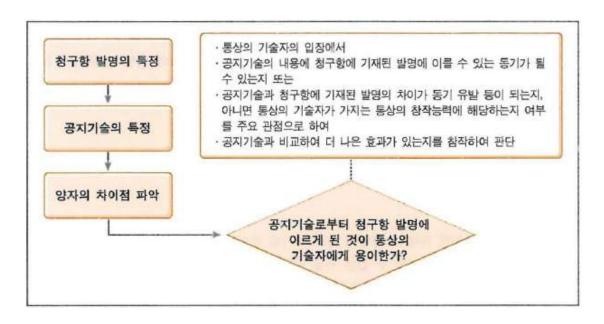
공지기술인지 여부는 국제주의이나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내의 기술 수준만을 고려한다.



특허등록 요건(진보성)

용이성

용이성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① 상업적 성공에 의한 모방품의 발생. ② 기술적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였던 과제의 해결, ③ 발명이 그 기술 분야에서 특정 기술과제에 대한 연구 및 개 발을 방해하는 기술적 편견으로 인해 통상의 기술자가 포기하였던 기술적 수단을 채용하여 그 기술과 제를 해결한 경우 둥은 진보성을 판단할 때 진보성 긍정 자료로서 참고하여야 한다.



특허등록 요건(선출원)

기출 5회 (선원주의,확대된 선원주의)

선출원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 가장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제도는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1발명 1특허 원칙, 즉 중복특허 배제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통일한 기술사장에 대하여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허등록 요건(선출원)

선출원의 판단

① 객체적 기준

선출원의 청구범 위와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청구항별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다만, 선출원이 출원 후 무효, 취하, 포기 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협의 불성립으로 거절 결정이 확정 된 경우는 제외), 선출원이 무권리자 출원인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후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출원일이 다른 경우의 판단

통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실용신안동록출원과 경 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허등록 요건(선출원)

③ 출원일이 같은 경우의 판단

통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특허출원인 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 를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이는 실용신안동록출원과 경합하는 경우에 도 적용된다.

④ 지역 적 기준의 판단

특허독립의 원칙상 국내 만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선출원한 통일한 발명을 우리나라에서 후출원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출원과 우리나리 출원 사이에서는 선출원이적용되지 않는다.

⑤ 판단 방법

특허 청구항을 기준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특허등록 요건(확대된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란 특허 출원한 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동록출원을 하여 그 특허출원 후에 출원 공개되거나 등록 공고된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산안등록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발명 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선출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 특허출원(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이 다른 출원(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사실상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의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특허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등록 요건(불특허 사유)

불특허 사유

특허를 허여하는 것은 사회 • 공익적 , 국가의 산업 정책적인 면에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을 규정하여 특허제도를 둘러싼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허 제도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공서양속에 위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① 발명이 어떤 유용한 효과가 인정되더라도 보통의 경우 이를 사용할 때 공서양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예) 여자의 몸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피임 기구
- ② 발명의 본래 목적이 사회질서 둥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으로서 실제 해하지는 않더라도 해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예) 아편 흡입 기구 , 위조지폐 제조 기구



Chapter.

실용신안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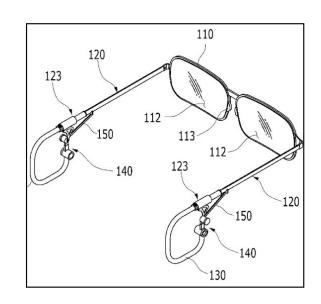
도입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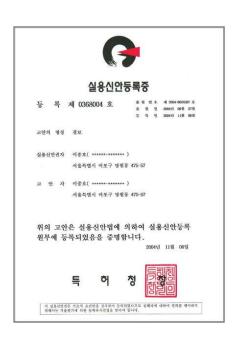
실용신안제도는 인간 생활에 유용한 새로운 물품을 창작하였지만 특허 부여에 필요한 기술적 진보 또는 발명의 고도성 기준에 달하지 못한 소(小)발명(고안)을 짧은 기간 동안 간이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실용신안

백미러 컵 홀더 자동차 도어 의자조정장치 안경테

(소발명, 고안)







보호 대상

실용신안제도의 보호대상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이다.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특허의 대상인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고안은 창작이면 족하고 특허와 같이 창작의 고도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발명과 비교된다.

- 자연법칙 : 특허와 동일

- 기술적 사상 : 특허와 동일

- 창작 : 특허와 동일

- 고도한 것 : 필요 없음

- 물품, 형상, 구조, 조합 : 특허에 없는 실용신안 요소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의 의미

① 방법 , 제조방법

물품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정한 형태를 갖는 '물건' 이어야 한다. 따라서 '방법'과 같이 물건과 다른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은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기능적 표현 만으로 기재된 것

~하는 것, ~하는 방식 등 기능적 표현만으로 기재되어 형상·구조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은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조성물 , 합금 , 화합물 등 물질에 관한 것

조성물, 합금, 화합물 등은 일정한 형상 또는 구조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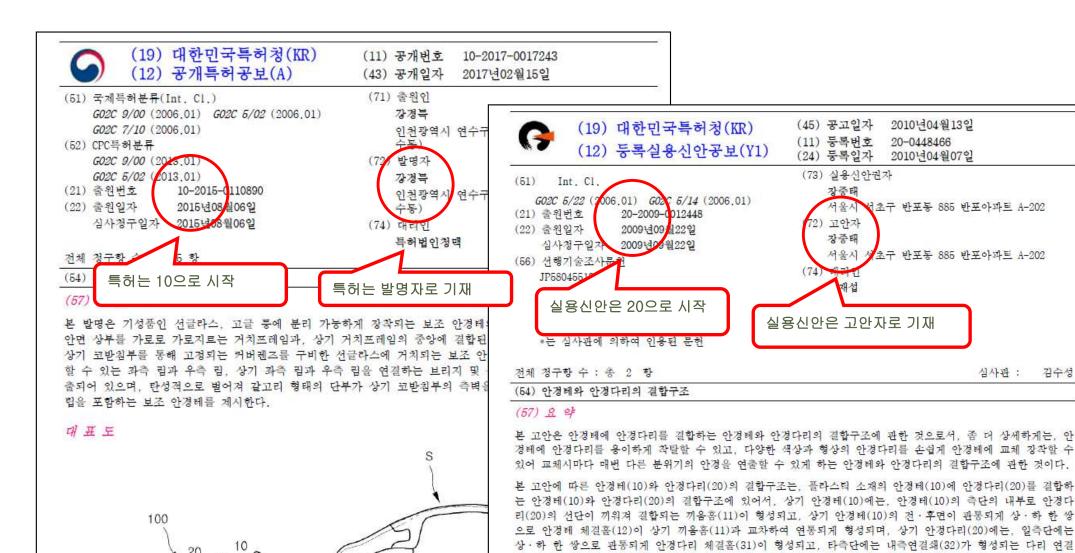
④ 삼차원의 것이 아닌 것

모양 , 마크 , 선 , 기호 등은 물품의 형상 · 구조 · 조합에 관한 것이 아니다

⑤ 기능, 게임 등

기능 , 게임 등은 그 자체로는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을 갖는 장치', '게임기'와 같이 고안의 대상이 물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만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대 표 도 - 도2

으로 한다.

체(30)가 구비되며, 선단에 내측으로 상기 다리 연결체(30)의 내측연결쇄(32)와 회전가능하게 연결나사(42)로 힌 지결합되는 연결쇄(41)가 형성되는 안경다리 몸체부(40)가 구비되며, 상기 다리 연결체(30)의 선단을 상기 안경

테(10)의 끼움흠(11)에 끼워 넣고, 한 쌍의 상기 안경테 체결흠(12)과 한 쌍의 상기 안경다리 체결흠(31)을 서로 입치시킨 후, 상기 안경테 체결홀(12) 및 안경다리 체결홀(31)을 체결구(50)로 관통결합시켜 체결하는 것을 특징

동아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사업단

10

IP DongA

김수성

특허 발명의 정의

구 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호대상	발명(Invention)	고안(작은 발명, Utility Model)
બા	자동차의 핵심 구동 장치, 제어 방법 (대발명 보호)	타이어, 핸들, 전조등 관련 장치 (소발명, 고안 보호)
보호정책	사익= 공익의 조화 (창작보호)	사익= 공익의 조화 (창작보호)
등록요건	신규성, 진보성, 산업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성
심 사	심사주의 (심사청구제도)	심사주의 (심사청구제도)
권리범위	특허등록청구범위, 동일성판단(원칙)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동일성판단(원칙)
존속기간	등록 후 출원일부터 20년	등록 후 출원일부터 10년



Thank You for Listening



동아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사업단